

「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강승수 의원 외 11명

2. 제안이유

- 대구경북신공항의 핵심 배후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공항경제권 중심의 도시건설을 추진하고 공항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공항경제권 중심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구성인원 : 12명(위원장 1명, 간사 1명, 위원 10명)
- 존속기간 :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
- 활동내용
 - 공항경제권 중심도시 건설 방안
 - 대구경북신공항으로의 편리한 접근성 착안 방안
 - 항공물류 거점 기반 구축 방안
 - 미래경제발전을 위한 산업 활성화 방안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:

- 지방자치법 제64조(위원회의 설치)
-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(특별위원회)

5. 검토의견

- 본 결의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 제7조에 따라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 2030년 신공항 개항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하여 경북 최고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항공물류 거점 기반 구축 및 통합 신공항간 교통인프라 확충 등 공항경제권 중심도시 구축을 위하여 의회 차원의 종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구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